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37
----------	-------

발의연월일 : 2025. 11. 25.

발 의 자 : 서천호 · 김선교 · 최보운
이만희 · 김용태 · 강명구
이달희 · 김예지 · 박덕흠
조은희 · 정성국 의원
(11인)

제안이유

어업은 농업과 함께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기초산업의 하나로서 헌법 제123조에서도 어업과 어민의 보호·육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주요 산업임.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은 어종의 변화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잡는 어업의 경우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르는 어업의 경우에는 폐사가 반복되어 어업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어업용 기자재값은 상승하고 있어 어업인의 연평균 어업소득은 2023년 기준 2,141만원에 불과한 실정인 반면, 2023년말 기준 어가 평균부채는 6,651만원으로 2022년 대비 11.3%가 증가하여, 어업용 부채는 64.7%에 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어업에 필수적인 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생활 보장과 안정적인 어업경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수어업용기자재에 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수어업용기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등에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업인에게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어업용기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9조).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생활 보장과 안정적인 어업경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필수어업용기자재”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에 꼭 필요한 기자재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인이 필수어업용기자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어업용기자재의 가격이 폭등한 경우 어가경영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어업용기자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수어업용기자재에 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필수어업용기자재 가격 폭등에 대한 대비 및 대응 계획
3. 필수어업용기자재 품목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필수어업용기자재 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6.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연도별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 품목에 관한 사항
3.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 금액 및 지원 한도
4. 그 밖에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수어업용기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업인에게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필수어업용기자재의 품목, 지원금액 등은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어업인이 제1항에 따라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어업용기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환수) ① 어업인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 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어업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